지방세 감면신청서 (출산·양육 지원 감면)

처리기한	5일

자동차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감면신청 자동차	차량번호		용도	영업용, 비영업용		
			종류	승용, 화물, 승합, 이륜차		
	배기량	cc	적재정량	kg	승차인원	명
감 면 사 유	3자녀 이상 취득세 감면 (최초등록일:)					
기존감면 차량번호	※ 기존 감면차량이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배우자 외의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말소해야 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아래 유의사항(감면 및 추징규정)을 꼭 읽어보세요.!

감면 및 추징 규정 안내

1. 감면대상

자동차 등록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입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12.31. 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시 종전 감면차량을 60일 이내에 이전 또는 말소하는 경우 포함). 다만, 배우자가 감면을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감면하지 아니 함. [2024년 기준 생일 안 지난 06년생의 자녀 3명 이상]**

2. 감면차량

-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한도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3. 추징사유 및 자진신고 안내

- 자동차 등록일부터 <u>1년 이내에 배우자 외의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u> 감면된 취득세 추징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시 추징 제외
- 대체취득의 경우 차량 등록일로부터 종전 감면차량을 60일이내 배우자 외의자에게 100% 처분하지 않을시 추징

※ 감면 후 추징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시 가산세는 추징하지 않음